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명시 등》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6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766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명시 등 (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3
(1)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제공 의무 관련 규정 현황	4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명시(안 제45조의2제4항 본문)	9
(3)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에서 기술형 입찰 제외 (안 제45조의2제4항 단서)	11
(4) 개정안 심사 시 고려사항	14
(5)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7

I.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766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6. 3. 20.

다. 회 부 일 : 2026. 3.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제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

히 제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명시 등 (안 제45조의2제4항 신설)

개정안은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며(안 제45조의2제4항 본문),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u> <u>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합</u>

현행	개정안
	<u>계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u>

(1)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제공 의무 관련 규정 현황

현행법 제45조의2¹⁾는 발주자²⁾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제45조의2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³⁾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5조의2제2항).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이하 “「공사기간산정기준」”이라 함)⁵⁾을 고시하고,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공사기간산정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공사기간산정기준」 제4조제1항),⁶⁾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이 고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공사기간산정기준」 제4조제2항)⁷⁾, 공공공사를 입찰할 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하며(「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 본문),⁸⁾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2항),⁹⁾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형 입찰”이라 함)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 단서)¹⁰⁾하여야 함.

6)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측량, 자재·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
2.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 폭우,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3.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
4.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

8)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②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경제부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¹¹⁾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열람·교부하도록 하되, 기술형 입찰 계약¹²⁾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공사입찰유의

11)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서」 제4조제1항제11호).

【 개정안과 「공사기간산정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의 내용 비교 】

구분	개 정 안	「공사기간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 안 제45조의2제4항 본문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u>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u> 하여야 함.	-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 본문 -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u>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u> 하여야 함.	-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u>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열람</u> 하게 하고 <u>교부</u> 하여야 함.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제외	- 안 제45조의2제4항 단서 -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함.	-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 단서 -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 -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기술형 입찰 계약)은 제외함.
입찰 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검토	- 안 제45조의2제4항 본문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u>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u> 하여 <u>입찰에 참가</u> 하여야 함.	-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2항 - ○건설공사의 <u>입찰참가자</u> 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u>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u> 하여 <u>입찰에 참가</u> 하여야 한다.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2)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명시

(안 제45조의2제4항 본문)

개정안은 대다수의 발주청이 입찰공고 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입찰참가자가 입찰 참가 전에 해당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검토할 수 없어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공사 입찰공고 사례를 살펴보면, 발주청이 산정근거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참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사기간만을 공고하고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¹³⁾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한 사례 예시 】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 고효율 비점저감시설 건설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공사개요

13) 국토교통부도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는 2022~2024년 발주된 공공공사의 입찰공고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10,046건 중 9,289건에 공사기간 산정근거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다기능저류조 1개소 및 고속여과시설 1개소 건설공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1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입찰관련 서류(제공문서 확인)에 명시
하였으니 입찰참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입찰공고문 일부 발췌, 공사기간 산정근거 관련 서류는 기재 생략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 예시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4년 ○○○ ○○○○○ 절개지 정비사업(○○ ○○)		
추 정 금 액	760,625,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4.○○.○○.(월) 10:00
기 초 금 액	576,385,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4.○○.○○.(수) 12:00
추 정 가 격	523,986,363 원	개 찰 일 시	2024.○○. 18.(수) 13:00
부 가 가 치 세	52,398,637 원	개 찰 장 소	○○○○○○○○○○
관 급 자 재 비	184,240,000 원		

1-1 공사현장 : ○○○○도 ○○시 ○○면 ○○리 ○○번지 일원

1-2 공사규모 : 계단식옹벽 (H=2~4m), L=24m, 낙석방지책 등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주- 입찰공고문 일부 발췌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사기간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공사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예규)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동 의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
하고 발주청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이며,

또한, 발주청의 의무를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열람

· 제공'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도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 근거에 대한 검토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에서 기술형 입찰 제외 (안 제45조의2제4항 단서)

안 제45조의2제4항 단서¹⁴⁾는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¹⁵⁾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공공공사를

14) 개정안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5)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되 다만, 기술형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설계·시공일괄입찰)하거나 정부 작성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대안입찰) 또는 공사비절감방안·공기단축방안·공사관리방안 등의 기술 제안서를 제출(기술제안입찰)하는 기술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¹⁶⁾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 기술형 입찰 개요 】

- (개념) 민간 창의성 활용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컨소시엄에게 일괄로 입찰하는 제도
 *(대상) 복합공종, 고난이도 및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 등(주로 300억원 이상의 공사)
- (종류) ①설계·시공 일괄입찰^{터키}(기본설계 전 발주), ②대안입찰(실시설계 이후 발주), ③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이후 또는 실시설계 이후 발주)
- (특징) 최종적인 설계는 입찰참가자가 수행하므로, 세부적인 산정근거를 입찰참가자가 제출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현행법 제45조의2에서 공사기간의 산정 주체를 발주자 또는 발주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고시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에서는 발주청이 정하여 공고한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되므로,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발주청이 정한 공사기간에 맞춰서 산정근거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제1항 중 기술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¹⁷⁾와 같이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17)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산정근거 열람·제공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술형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들의 제안하는 공기단축방안 등이
적정 공사기간과 그 산정근거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 개정안 심사 시 고려 사항

개정안과 유사하게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하는 내용의 법률안으로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¹⁸⁾이 계류 중임.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16호), 2025.12.31.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①발주청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제공, ②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검토 후 입찰 참가, ③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제외 공사의 대통령령 위임을 규정하고 있고,

조정식의원안은 ①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②기술형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공개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특히, 두 법률안의 단서 부분은 기술형 입찰 참가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제출 여부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요구에 대하여, 관련 단체(대한건설협회)는 기술형 입찰 참가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제출’에 대하여 현실적인 한계¹⁹⁾²⁰⁾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는바,

19)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는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청이 공고한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20) 국토교통부는 기술형 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출’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사기간산정기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주어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정계획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공정관리의 차원의 제도 운영이라고 설명함.

두 법률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또는 제공 의무 규정을 위한 적절한 조문과 기술형 입찰 참가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제출 필요성 및 한계점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및 조정식의원안의 조문 비교 】

현행	개정안	조정식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816호)	비고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생략)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 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제공 하여야 하며,	④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를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안: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제공 -조정식의원안: 발주청은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공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 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개정안: 입찰참가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 검토 후 입찰 참가
	다만, 입찰자가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을 공	-개정안: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가 제외되는 공사를 대통령령 위임

현행	개정안	조정식의원안 (의안번호 제2215816호)	비고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고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입찰 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정근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식의원안: 기술형 입찰은 발주청이 입찰참가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요구

(5)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 의견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제공 의무, 입찰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검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에 찬성하며, 다만 기술형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발주청이 공고하는 공사기간 내 이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①‘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②

「공사기간산정기준」²¹⁾에 규정된 ‘기술형 입찰 참가자의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출’은 현행 법체계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²²⁾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공사의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국건설경영협회는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복사 및 다운로드 등’을 허용하여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2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 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대한건설협회는 기술형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이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발주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에 부합하지 않고, 발주청이 정하여 공고한 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입찰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므로 입찰참가자가 발주청이 정한 공사기간에 맞춰서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